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용선·서영석·장철민

전재수 · 김성환 · 이해식

윤건영・조 국・위성락

김주영 · 백승아 · 김용민

장종태・김 현・윤종군

전진숙 · 정성호 · 민형배

정준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 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간호와 이송은"을 "간호·이송과 간병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	제41조(요양급여) ①		
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	<u>.</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8. 간병</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u>간</u>	제42조(요양기관) ① <u>간</u>		
<u>호와 이송은</u> 제외한다)는 다음	호·이송과 간병은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